

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5월 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5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5. 13) 상정
- 제10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5. 13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명호)

가. 제안이유

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할 주민세 부과지 통보기한의 단축 및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간 연장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관할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 하던 것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기간을 단축 조정함 (안 제24조제3항)
-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함
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조정함 (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)
-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정함. (안 제105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없음	<input type="radio"/>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13호
의결연월일	2003.5.15 (제104회)

제출연월일 : 2003. 5. >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지 통보기한의 단축 및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관할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 하던 것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기간을 단축 조정함 (안 제24 조제3항)
-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함
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조정함(안 제28조제1항1호다목)
-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정함(안 105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중 “그 다음달 말일까지”를 “그 다음달 15일까지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다목중 “도시계획법”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 한다.

제105조제2항중 “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”를 “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) ① 및 ②(생략)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<u>그 다음달 말일까지</u>(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)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24조(소득세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) ① 및 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그 다음달 15일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8조(세율) ①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호가 및 나(생략) 다. <u>도시계획법</u> 및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·녹지지역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6</p>	<p>제28조(세율) ① ----- ----- ----- 제1호가 및 나(현행과 같음) 다. <u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05조(납기) ①(생략)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<u>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</u>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</p>	<p>제105조(납기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</u>----- ----- -----</p>